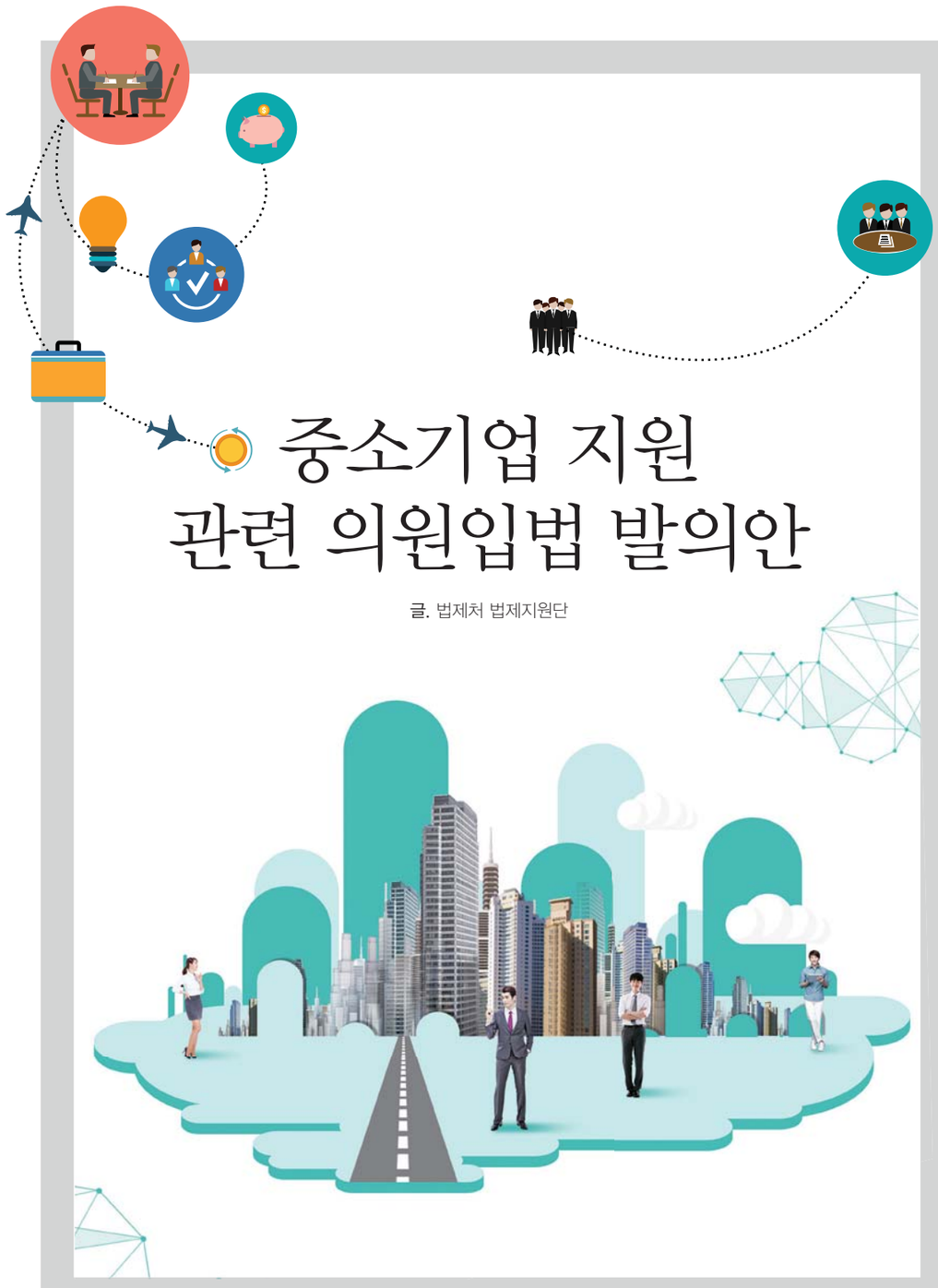


중소기업 지원 관련 의원입법 발의안

글. 법제처 법제지원단

Ⅰ | 입안배경

중소기업은 고용 및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간한 「2016 중소기업 위상지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3,542,350개로 전체 사업체의 99.9%를 구성하고 있고,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전체 고용의 87.9%의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의 고용창출에 대한 기여도면에서도, 중소기업은 지난 5년간 고용증가분의 88.8%를 기여한 반면, 대기업은 11.2%를 기여하였고, 지난 5년간 생산액 증가에 50.6%를, 부가가치 증가에 53.6%를 기여하였다.

따라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간절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20대 국회에서는 창업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구매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하에서는 20대 국회 개원 후 지금까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Ⅱ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공공기관의 청년창업기업제품 구매

현행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이 창업하여 경영하는 청년창업기업의 판로를 확대하여 줄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은 청년창업기업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구매계획을 작성하고 구매계획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창업기업의 판로를 확대하려는 것임(황희의원 대표발의)

나. 창업지원 대상 확대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창업자로 규정하고 창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면 운전자금 대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창업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지원 혜택에서 배제됨에 따라,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 종합지원 대책의 하나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까지 창업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김성찬의원 대표발의)

Ⅲ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공공구매 가이드라인 마련

현행법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각종 공공구매제도를 두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기업제품 구매제도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는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제도를 두고 있음.

이처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가 다양하고 여러 법에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다 보니, 각종 공공구매제도 간에 경합이 생기고 공공구매 업무 실무를 집행함에 있어 현장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되는 등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 실적의 작성 요령,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침 등 공공구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박정의원 대표발의).

나. 공공구매제도 적용대상 공공기관 확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판로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에 정부는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확보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구매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기관이 많아 제도의 외연 확대가 시급한 실정임.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정부에서 출연금을 받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의무가 법적으로 전무한 상황임.

따라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구매제도에 적용받는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하여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현재의원 대표발의)

Ⅳ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진입시점이 30세 이후인 경우도 적지 않아 현재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청년연령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지원 확대 효과를 위해 현행 2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청년층의 연령을 34세 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채이배의원 대표발의)

Ⅴ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통해 중소기업청에서 기술침해현황 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태조사가 제대로 선행되지 못하고 미흡한 실정임.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행령에 있는 실태조사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여 중소기업기술보호 관련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조경태의원 대표발의)

Ⅵ | 입법전망

중소기업의 나라인 독일은 세계시장을 선도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강소기업인 히든챔피언을 1,307개나 보유하고 있다. 이는 23개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와 대비되며, 인구 1백만명당 히든챔피언의 수도 독일은 16개의 히든챔피언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0.5개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강소기업인 히든챔피언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등 혁신노력과 함께 정부의 지원이 간절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선진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판로 개척이나 인력 부족 등으로 도태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은 국가 재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가 재정상황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